

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 CHECK!

예배

- ▶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/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입니다.
- ▶ 교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/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/간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.
- ▶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.



헌금

- ▶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▶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,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.
- ▶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.
- ▶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입니다.



기부

- ▶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다만,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입니다.



말

- ▶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. 단,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. 선거운동 기간(3/28~4/9)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.
- ▶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인들에 대해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나 금지됩니다.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삼가야 합니다.



통신

- ▶ 정보통신망(문자메시지, 카카오톡, 유튜브, SNS 등)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▶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.



명함

- ▶ 교회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입니다. 단,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.
- ▶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(3/28~4/9)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합니다.



사진

- ▶ 선거일 90일 전(1/11)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됩니다.



|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해 '후보자'라고 표현했습니다.

| 문의 (사)기독교윤리실천운동
02-794-6200
cemk@hanmail.net

